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ly 10 2023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스위스: 국민투표로 글로벌최저한세(필라 2) 시행 승인

2023 년 6 월 18 일 국민투표를 통해 스위스 국민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연방 의회는 글로벌 세원잠식방지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이하 "QDMTT")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 배경

스위스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위스의 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 최근 진행사항

스위스 국민들은 2023년 6월 18일 정부가 (임시) 시행령을 발표하기 위해 필요한 헌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5월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향후 진행사항**

스위스 국민들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연방 이사회는 이제 스위스에서 글로벌 최저 한세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2024년 1월 1일 이후(또는 EU와 일치하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작 되는 회계연도에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QDMTT)와 소득산입규칙(IIR)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특히 EU에 소속된 많은 국가에서 추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많은 국가에서 규정한 대로 2025년 1월 1일 이후(또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사업연도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해 정상이자 과세처분은 타당함.**

조세심판원은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미회수금액에 대해 정상이자율 적용을 통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3.20 조심 2022 중 2863)

- **요약**

청구법인은 섬유 염색사업을 영위하는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원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 매출채권")을 정상회수기간이 지나서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근거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산출된 이자 상당액을 정상이자로 보아 익금산입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채권을 제 3 자에게 매각하고 처분손실을 인식하였으며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없이 계속적으로 해외특수관계법인에 원사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점, 청구법인은 국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손금 처리하였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로, 해외특수관계법인들은 자본잠식 상태로 신용도 산출이 어렵고 쟁점매출채권의 만기도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가능 거래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근거한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은 해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12.14. 선고 2022 누 36010 판결

제목: 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 1) 사실관계

- 원고는 종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룹 내의 다른 계열사들의 무형자산을 사용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가, 2013.11.1. 다른 연합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프랑스법인(이하 "E")과 유리제조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E가 청구한 분담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한-프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 원고는 2018.10.3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이므로 분담기준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지만 조세심판원에도 이를 기각하였음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음 (서울행정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82918 판결)

### 2) 당사자들의 주장

#### (1) 피고의 주장

- 구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원가분담약정의 핵심적 요건인 '기대편익'에 관하여 '원가의 절감' 또는 매출액 등의 증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기대편익이 아니라 '순매출액' 자체를 분담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원가분담약정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과거에 이 사건 비용을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구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에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이하 "원가분담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가분담약정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E가 보유한 기존 무형자산 등을 연구개발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구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제외되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일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무형자산 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대가는 성질상 사용료에 해당함

### (2) 원고의 주장

-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순매출액'을 기대편익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원가분담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으며, 설령 기대편익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비용이 정상 원가분담액에 비해 과다하거나 과소할 경우 과세당국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을 뿐이지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음
- 구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은 정상원가분담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원가분담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원가분담명세서 제출을 원가분담약정의 형식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비용은 무형자산 등의 공동개발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분담액일 뿐이고 기존 무형자산 등의 사용대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원가분담약정의 중도참여자로써 다른 참여자들에게 기존 무형자산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무상 사용 또는 과다 지급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을 뿐이지 사용료라고 볼 수 없음

### (3) 판단

- ①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유리제조기술 연구개발 연합의 구성원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E와 ★★그룹의 판유리 활동에 속하는 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이러한 참여자들이 연합의 공동 노하우 집합에 속하는 무형자산을 사업활동의 범주에서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효익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점, ③원고들은 종래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위 연합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연합에 속하는 특허 등을 유리제조 사업활동에 사용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기대편익의 표지로 삼은 '순매출액'은 합리적인 점,
- 납세의무자가 원가분담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만 비로소 원가분담약정으로 성립되거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또한, 원고들이 중도 참여자로서 다른 참여자들에게 기존 무형자산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또는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원가분담약정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비용을 원가분담비용이 아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최신 판례: 조세심판원 2023. 04. 03. 선고 2022 관 0028**

**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 9503.00-3300 호,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 9503.00-3919 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취소)**

###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완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플라스틱 완구(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HSK 제9503.00-3300호(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WTO양허관세율 0%)로 수입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함
- 심사 당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관련 이슈가 제기되자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HSK 제9503.00-2130호 등(기본관세율 8%)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청구법인에 회신
-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위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 결과와 같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련 관·부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이슈

- 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로 보아 HSK 제 9503.00-3300호, '그 밖의 기타 완구' 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3) 결정

- 쟁점물품은 모든 부품들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요철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끼워 맞출 수 있으며, 이미 조립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체가 가능하고, 해체 후 당초 사용된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 포장된 형상과 다른 모양으로 재조립이 가능함
- 처분청이 일체형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일부를 탈·부착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조립 및 해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제작 의도를 보았을 때 특정 모형의 완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놀기 보다는 조립·해체를 통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끼워 맞추면서 놀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쟁점물품 중 피규어(figure)의 경우, HS 해설서에서 '장난감 병정'이 제9503.00-2호(인형)가 아닌 제9503.00-3호(그 밖의 완구)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주장하는 인형(doll)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조립식 완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견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4) KPMG's Comment

- 관세율표 제9503.00-3300호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관련 "constructional"이나 "assembly" 또는 "set" 등의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관세당국에서는 이를 종종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 많은 완구 회사들은 제품을 조립 또는 분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분류를 채택하고 있음
-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2005년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에서 결정한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의 품목분류 세부적용지침'에 따라 물품을 비교해보고,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 조립식완구의 품목분류 세부적용지침]

##### ○ 분류기준

- 조립세트·빌딩블록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품을 끼워 맞추거나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면서 노는 장난감으로 완구의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의 조립·해체에 있는 것을 말한다.
  - i) 사용설명서가 있고, 그 설명서 또는 포장 박스 등에 만들 수 있는 모형을 예시하고 있다.
  - ii)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비교적 복잡한 한 가지 형태의 완성품만 만드는것도 포함한다.
  - iii) 시리즈물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시리즈 물품 상호간 호환이 가능하다.
- 조립세트는 각 구성부품에 요철, 나사구멍이 있거나 연결 클립 등이 있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하다.
- 빌딩블록은 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며, 세모·네모·원형·원뿔·원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

# Key Contacts

##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